

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(제14조의2제2항 관련)

| 구분        |                  | 규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공공시설      | 공원사무소            | 부지면적 2,000제곱미터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매표소              | 부지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탐방안내소            | 부지면적 4,000제곱미터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보호 및 안전시설 | 대피소              | 부지면적 2,000제곱미터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대피소 외의 시설        | 별도의 규모 제한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휴양 및 편의시설 | 야영장              | 부지면적 6,000제곱미터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휴게소              | 부지면적 1,000제곱미터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전망대              |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야생동물관찰대          |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공중화장실            | 부지면적 500제곱미터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교통·운송시설   | 도로               | 2차로 이하, 폭 12미터 이하(일방통행방식의 지하차도 및 터널은 편도 2차로 이하, 폭 12미터 이하로 하며 구난·대피공간을 추가할 수 있음) |
|           | 탐방로              | 폭 3미터 이하, 차량 통과구간은 폭 5미터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교량               | 폭 12미터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궤도<br>(삭도는 제외한다) | 2킬로미터 이하, 50명용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삭도               | 5킬로미터 이하, 50명용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선착장              | 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헬기장              | 부지면적 400제곱미터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공원사업      |                  | 공원구역에서 기존시설의 이전·철거·개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비고: 교통·운송시설 중 탐방로(국립공원의 탐방로만 해당한다)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입지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평가에서 적정 평가를 받은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.